

#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8-681

제출년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안산시장

## 1. 제안이유

- 초지생활권(원곡동, 초지동, 신길동) 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노후화된 관산체육관과 백운동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거점형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2. 제안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 자.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제안내용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
  - 공공청사 폐지 :  $1,650\text{m}^2 \rightarrow 0\text{m}^2$  [감]  $1,650\text{m}^2$ ]
  - 체육시설 변경 :  $10,082.0\text{m}^2 \rightarrow 11,732.2\text{m}^2$  [증]  $1,650.2\text{m}^2$ 
    - ☞ 체육시설 확장으로 인한 공공청사 폐지
    - \* 체육시설 기정면적 정정으로 인하여 공공청사 감소 면적보다  $0.2\text{m}^2$  추가로 증가됨



#### 4.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 2018. 10.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18. 10. : 용역과제 심의
- 2018. 12. : 사업 타당성용역 예산 편성(‘19년 본예산)
- 2019. 01. :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 2019. 05. :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
- 2019. 07. :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11. :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0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21. 07. :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2021. 09. :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예정)
- 2021. 10. :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
- 2021.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예정)

##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1) 공공·문화체육시설

##### 가) 공공청사

######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	원곡2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원곡동 936-5	1,650	감) 1,650	-	건설 제1989-460호 (1989.8.14)	

######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원곡2동 주민센터	○ 원곡2동 주민센터 폐지	○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 부지를 확보하고자 현재 이용하지 않는 공공청사 폐지

##### 나) 체육시설

######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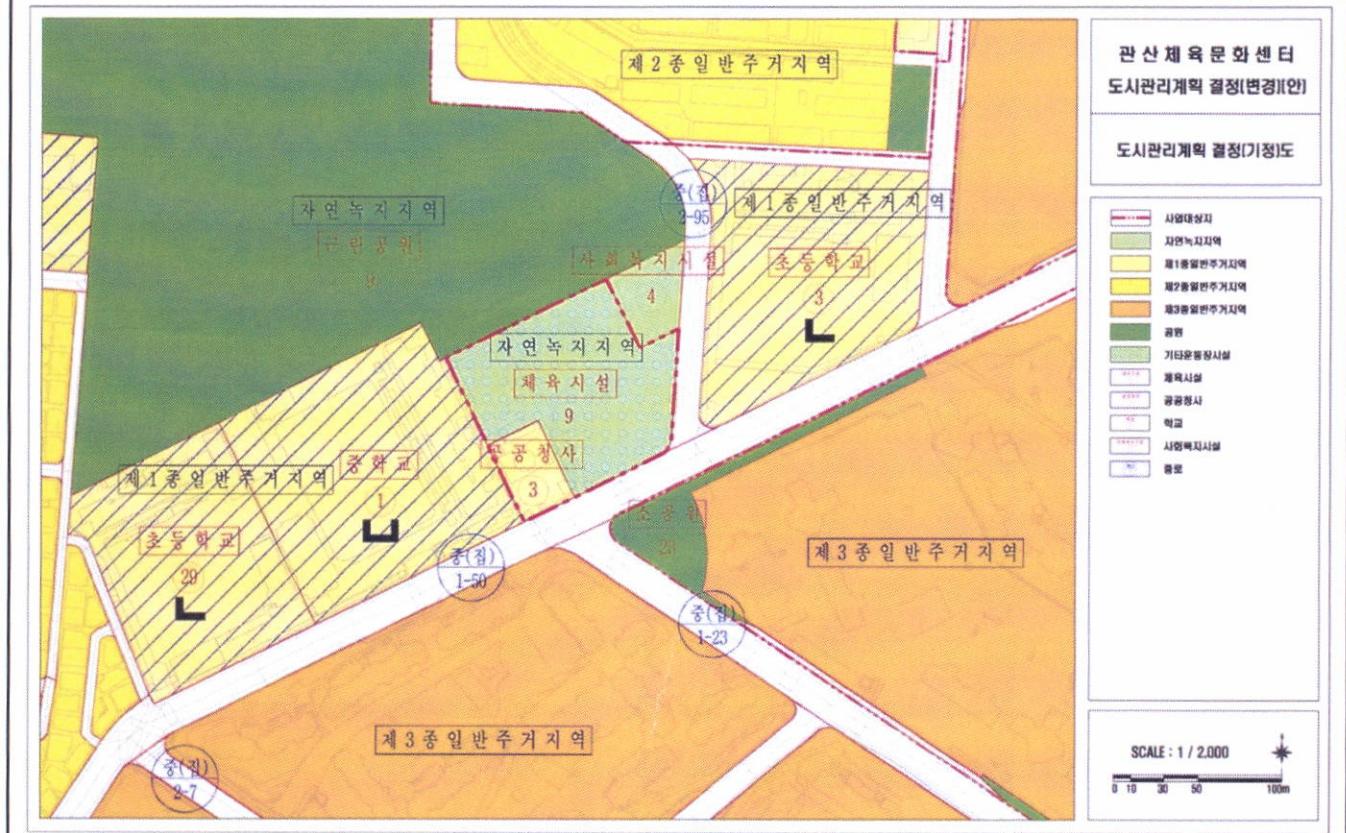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관산 운동장	운동장	원곡동 936	10,082.0	증) 1,650.2	11,732.2	건설 제1985-399호 (1985.9.17.)	

######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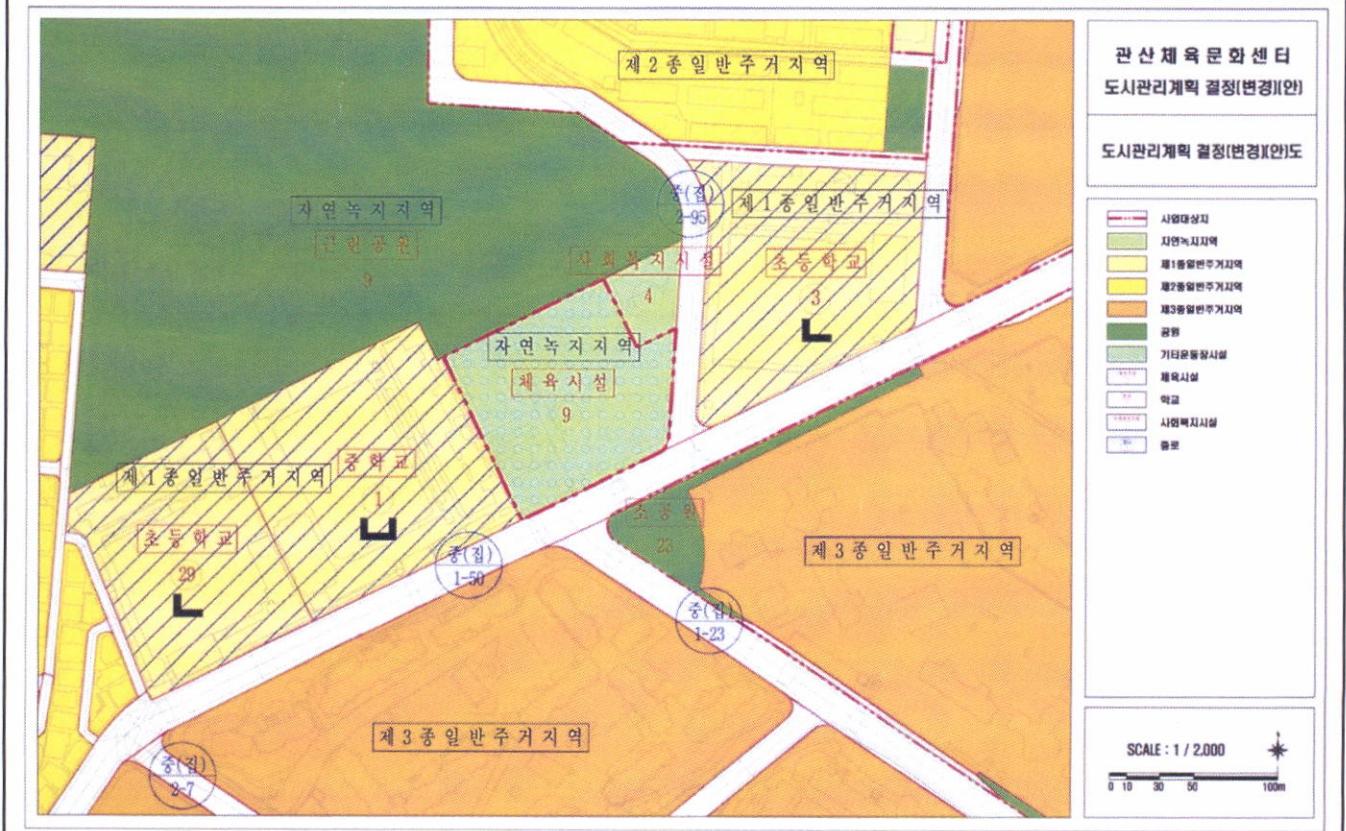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관산 운동장	○ 변경 - 면적 : 10,082.0m <sup>2</sup> → 11,732.2m <sup>2</sup> (증 1,650.2m <sup>2</sup> )	○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기존 공공청사 부지 편입 및 공부상 면적 반영(면적 정정 0.2m <sup>2</sup> 증가)

## 6.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 7. 교통처리계획도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주변기로 및 교차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입사거리 신호최적화 방안 제시</li> </ul>
주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확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주차대수 : 45대</li> <li>- 주차수요 : 54대(원단위법), 30대(누적주차대수법)</li> <li>- 계획주차대수 : 60대</li> <li>- 법정대비 133.3%, 수요대비 111.1%(원단위), 200.0%(누적주차대수)</li> <li>- 장애인주차 : 3면 (계획주차대수의 5.0%)</li> </ul> </li> </ul>
보 행 및 교통안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입사거리 진입을 위한 노면표시 설치</li> <li>■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li> <li>■ 사업지 주변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li> </ul>

## 8.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장애인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조건부 허가 가능임을 알려드림</li> <li>○ 금회 협의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것으로 실시계획도서가 첨부되지 않아 현재 사업단계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li> <li>○ 다만, 본 사업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판단되오니 본 사업에 대하여 추후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협의요청하시기 바람</li> <li>○ 관산체육문화센터의 경우 별도로 BF인증을 득하셔야하는 대상임을 알려드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공용건축물 협의(실시계획 인가)시 관련도서 작성 및 협의요청 실시</li> <li>○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일반등급] 예정</li> </ul>	반영
건축 디자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시 건축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시기 바람(단, 현상설계 등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을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설계공모(현상설계) 추진한 사항으로 제외대상 ※ 2020.12.16.(수) 건축설계공모 심사</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은 착공신고 전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를 득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시설(체육관)로 다중이용 건축물 미대상</li> <li>○ 특수구조건축물(기둥간 거리 20M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예정</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시 경관조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전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시기 바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설계공모(현상설계) 추진한 사항으로 제외대상 ※ 2020.12.16.(수) 건축설계공모 심사</li> </ul>	반영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시 관련법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수역 오염방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유출·누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종 장비운영에 따른 폐유 및 폐윤활유 등이 공공수역과 토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겠음</li> </ul>	반영

부서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산먼지 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 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고, 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발생 시 자원순환과 협의 후 신고 및 적정 처리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겠음</li> </ul>	반영
교통정책과	○ 의견없음	-	
회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10.28)에서 해당 안전에 대해 취득 심의(기존 건물 멸실)를 거친 사항이며, 구 백운동주민센터(원곡2동주민센터) 건물은 2020년 6월경 철거 완료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백운동행정복지센터(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하여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 예정</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용도변경(공공청사→체육문화센터)된 상황이며,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체육진흥과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백운동행정복지센터(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하여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 예정</li> </ul>	반영
수도시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공급이 필요할 경우, 실시계획 시 세부적인 상수계획에 대해 우리 부서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건축물 협의(실시계획 인가)시 협의 예정</li> </ul>	반영
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인가 시 하수도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건축물 협의(실시계획 인가)시 협의 예정</li> </ul>	반영

## **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금번 변경 결정 체육시설 부지 주변에는 시립어린이집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어린이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대책 수립, 효율적인 차량진출입로 동선 배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관리부서인 체육진흥과와의 사전 협의와 사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한 복합 체육시설 배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또한, 인근 공동주택의 재건축 완료 이후 연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취학 원아수가 현저히 줄어들 경우 해당 어린이집 부지를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시행하기 바람.